

# 環境保全法의 概要

## 權 肅 約

延世醫大教授·藥博  
學校保健協會理事

1963年 우리나라의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實施함에 있어서 將次豫測되는 境環污染公害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公害防止法이 公布되었다. 이 法은 公害의 原因이 되는 煤煙가스, 粉塵, 騒音, 振動, 惡臭, 廢水 等이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 것을 抑制하기 위해서 排出施設을 主로 規模가 比較的 큰 工場施設을 指定하고 個個施設에서 排出되는 大氣 水質污染 物質과 騒音 振動의 許容 限界를 定하였다. 그리고 그 程度를 超過하는 施設에는 公害防止施設設置, 施設의 改善, 操業停止命令, 改修하여도 排出이 抑制되지 않는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移轉命令等 行政措置를 取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公害防止法 施行中에 法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有毒物質의 排出이 公害을 惹起하는 것이 認定되어 1971年에 特定有害物質의 種類를 擴大適用하는 公害防止法 改正을 보게 되었고 모든 產業場이 操業前에 環境物排出施設의 設置에 事業許可를 받고 施設後에 檢查를 받도록 規定되어 從前의 公害의 事後對策에서 事前對策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規制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諸都市와 工業地域은 勿論 河川海水污染은 產業發展과 經濟伸長과 平行해서 大氣水質 土壤污染은 深化되고 農水產物山林의 被害와 都市의 紙水源인 河川污染, 大氣污染에 의한 健康障害가 增加하고 있어서 不可避하게 公害防止 根本對策을 確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公害防止의 根本對策은 公害源을 規制團束하는 消極的 對策에서 國土環境을 計劃的으로 管理하는 積極的이고도 綜合的인 對象이 要請된다.

1977年 12月 31日 公布된 環境保全法(第3078號)은 從前의 公害防止法은 1978年 6月末로 廢止하고 舊法의 缺陷을大幅補完하여 美日에서 採擇하고 있는 環境計劃에 立脚한 規制와 政府와 企業의 責任을 明示한 法이라고 하겠다.

### 1. 環境保全 定義

環境保全法의 主要 規定의 內容은 舊法의 目的에서 「大氣 水質污染과 騒音 振動 惡臭 等으로 因한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한다」는데 追加해서 土壤污染을 插入하여 土壤污染의 原因도 規制 할 것을 明示한 것이다. 여기에서 環境이라 함은 「自然狀態의 自然環境과 人間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財產의 保護 및 動植物의 生育에 必要한 生活環境」이라고 規定하여 自然과 生物 全般에 미치는 環境影響까지를 規定對象으로 할 것을 明示한 것이다.

### 2. 環境基準과 規制

法 第4條에 保健社會部長官은 環境污染으로부터 人間의 健康을 保護하고 快適한 環境을 保全하는데 必要한 環境基準을 設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設定된 環境保全 地域內에서 大氣 水質 土壤의 污染의 限度를 人間의 健康保護와 快適狀態로 維持하고자 하는 環境計劃과 行政의 目標를 設定하는 것으로 이 目標達成을 위해서는 土地利用과 施設設置의 制限(第8條), 都市開發 產業立地 造成과 エネルギ開發等의 事前合意(第5條), 排出許容基準(第14條), 排出施設의 設置 義務化와 事前許可(第15條), 排出施設의 檢查(第16條), 違反 業所의 改善命令(第17條)과 操業停止命令(第18條), 排出施設의 移轉命令等의 行政措置를 取할 뿐만 아니라 事業物에서 排

出되고 大氣汚染物이나 水質汚染物이 第14條의 排出許容基準에 違反되지 아니하는 데에도 不拘하고 環境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超過하여 그 結果가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 및 財產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어 保健社會部長官은 그 區域內의 事業場에 對해서 大氣水質汚染物質의 排出을 總量 規制할 수 있게 (第26條 및 第36條)하고 必要하면 事業場에 對해서 燃料使用을 制限하거나 變更을 命할 수 있게 했다(第27條). 이 環境基準을 設定한 것은 公害防止와 環境保全의 維持水準을 行政的으로 設定한 것이지만 모든 汚染物과 環境汚染의 影響을 現在 다 把握하지 못하기 때문에 將次 새로운 汚染物에 對해서 必要 할 때에는 基準項目을 擴大 適用할 수 있고 따라서 規制의 對象도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

### 3. 環境評價

環境基準의 達成 與否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保健社會部長官과 市道知事은 각各 全國과 管轄區域의 環境汚染實態를 測定網을 設置해서 常時 測定할 義務가 있다(第6條). 그리고 事業者는 自身의 事業所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여 記錄해서 保管하도록 되어 있다(第22條).

### 4. 特別對策地域과 特別綜合對策의 樹立

이러한 計劃과 規制 그리고 評價 保健社會部長官이 人口 및 產業이 集中하여 環境 汚染이 顯著하거나 顯著하게 될 憂慮가 있는 地域을 特別對策地域으로 提定하는 데에서부터 始作된다. 管轄 市道知事에게 그 地域內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하여 施行 할 것을 命하게 되며 市道知事은 그 對策을 樹立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第7條).

### 5. 影響圈의 綜合管理

大氣 및 水質汚染이 市道知事의 管轄區域을 넘어 擴範圍한 影響을 미칠 때와 그러한 可能性이 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態調査와 防止對策을 講究하기 위해서 行政管轄區域에 不拘하고 大氣汚染의 影響圈 地域과 水質汚染의 水系別 水域管理를 할 수 있게 第13條의 規定은 第6條의 全國의 環境汚染實態把握을 위해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全國에 測定網

을 設置 運營하는 것과 關聯하여 廣域화 해가는 環境汚染을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新しい 制度가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過去에 漢江 洛東江에서 頻繁히 發生되는 水質汚染이 上流의 他市道에서 廢水와 下水를 放流하므로써 發生되었을 때에는 被害區域의 行政權이 排出區域에 미치지 못하고 放置되어 繼續의인 被害를 받은 例가 있다.

### 6. 自然環境保全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해서는 保健社會部長官은 生物의 生育環境을 調査하고 그 結果 特別히 保全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은 自然環境保全地區로 指定할 것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게 되어있고(第9條) 또한 特定有害物質 또는 產業廢棄物 動物의 死體糞尿塵芥 또는 染泥 等을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廢棄하는 行爲나 自然環境毀損 또는 自然環境 保存을 위한 施設物을 破損하는 行爲는 禁止(第37條)되어 있으며 公共水域의 占用 또는 埋立許可하고자 하는 主務官廳은 公共水域의 環境染污과 그것으로 因한 保健衛生 危害을 防止함에 必要한 條件을 불여야 하도록 했다(第38條).

### 7. 處理施設의 設置提示와 放流水 水質基準

水質染污을 일으키는 下水 또는 糞尿終末 處理는 保健社會部長官이 必要 하다고 認定 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下水道 廢棄物의 處理 施設을 設置 整備하도록 提示할 수 있고(第40條) 또 市道知事은 處理施設에서의 放流水는 保健社會部長官이 規定한 放流水와 水質基準에 適合하여야 하게 되어 있다(第39條).

### 8. 土壤污染防止

特定 有害物質에 의한 農耕地 草地의 汚染 防止를 위해서 必要 할 때에는 農耕地에 流入하는 用水의 水質基準을 定하거나 覆土 削土 等의 措置를 市道知事が 할 수 있으며(第41條) 特別對策地域內에서 土壤 또는 水域이 特定有害物質에 의하여 汚染되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土地 所有者 또는 栽培者에 對하여 當該 汚染地域에 對한 農水產物 等의 栽培를 制限할 수 있다. (第42條)고 規定하고 있다. 이 栽培制限의 規定은 土壤이 카드뮴 水銀 農藥 等으로 汚染되었을 때에

는 農產物의 種類에 따라 이를 染污物質이 農作物에 吸收되어 人體에 被害를 줄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 9. 騒音振動의 規制

市道知事은 住民의 生活環境保全을 위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그 地域을 騒音規制地域으로 指定告示하며(第33條)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서 騒音規制 基準을 定하게 되어 있다. (第34條). 이터한 指定地域의 告示는 都市住居地, 遊園地, 觀光地域, 古蹟들이 該當되며 必要할 때에는 野生生物, 保護地域(自然保全地區) 等에도 實施될 수 있다.

또 騒音振動防止를 위해서 騒音規制 地域내에서는 特定工事を 事前 申告하고 騒音振動의 規制基準을 超過할 때에는 作業時間의 調整 防止施設 等을 命할 수 있게(第35條)했다.

#### 10. 自動車排氣의 規制

自動車의 排氣가 都市大氣染污의 重大한 原因이므로 保健社會部長官은 自動車와 重機의 排出ガス 煤煙 等의 排出許容 基準을 自動車 種類별로 定하게 되었다(第27條) 또 市道知事은 이들排出ガ스가 사람의 健康에 重大한 危害을 가져올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면 그 地域의 自動車 通行을 統制할 수 있게 하고(第29條), 自動車 製作者나 輸入者에게 許可의 排出ガス 濃度基準을 適用規制하며(第30條) 自動車 燃料 添加制를 添加할 境遇 그것으로 因하여 人體에 顯著한 害毒性이 있는 物質 例컨데 鉛化合物이 排出될 때에는 그 添加劑의 便用을 規制할 수 있게 하였다(第31條).

#### 11. 惡臭發生禁止

保社部長官이 定한 地域내에서는 適合한 燃却施設이 없이 고무 合成樹脂, 또는 廢油 等 惡臭가 發生하는 物質의 燃却은 禁止하고 있다(第31條).

#### 12. 環境保全施設費의 負擔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 因하여 發生되는 環境染污을 防止하기 위해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고 事業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 또는 全部를 負擔하여야 한다(第43條). 이 때에 各事業者가 負擔할 境遇에는 事業活動의 種類規

模 및 汚染物質의 排出程度을 基準으로 하여 負擔總額을 配分한 金額으로 한다(第44條).

#### 13. 防止施設業과 產業廢棄物處理業

環境污染防止 施設의 設計 施工業을 保社部長官의 登錄制로 하여(第47條) 有資格者 만이 할 수 있게 하였고 產業廢棄物 處理業은 保社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第50條) 廢棄할 때에는 汚染物質 排出許容 基準에 適合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第51條). 단 廢棄處理業者 處理後에 生成된 廢棄物을 營業場所外의 場所로 運搬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미리 申告하도록 되어 있다(第51條 2項).

廢棄物處理業者나 事業者가 自己 事業에서 生成된 廢棄物을 終末 處理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미리 申告하고 部令으로 定한 方法과 基準에 따라 處理하여야 한다(第52條).

#### 14. 紛爭調停과 被害賠償

環境污染으로 인해서 紛爭이 發生할 때에는當事者는 市道知事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은 그것이 管轄區域에 限定期 된 紛爭인 境遇에는 市道知事 所屬下에 있는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서 調査委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고 調整하며 管轄區域 外에도 關係되는 紛爭인 境遇에는 保健社會部長所屬下의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 回送하여 調整한다(第53—158條). 紛爭은 申請日로 부터 90日 以內로 하고 調整調書는 民事訴訟法 第206條 規定에 의한 和解調書와 同一 効力を 갖게 하였다(第59條).

事業場 等에서 發生한 汚染物質로 因하여 人體의 生命 또는 身體 被害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事業者가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하고 事業場이 2個 以上이고 原因事業場의 責任이 不分明할 때에는 各 事業者가 連帶賠償하도록 無過失責任을 規定하였다(第60條).

이것은 被害者가 競爭污染의 原因을 立證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取해진 規定으로 事業者가 過失이 없다고 하더라도 發生된 被害를 賠償하도록 한 因果關係의 蓋然性을 通用한 規定이다.

#### 15. 罰則의 強化

<12페이지에 계속>

결핍성 빈혈도 중요하다. 회충, 십이지장충의 감염이 빈혈의 요인인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히 십이지장충(釣虫)에 의한 실혈은 세 가지 요인으로 된다고 한다. 첫째는 십이지장충의 흡혈로 인한 빈혈인 바 1일 한 마리가 약 0.5 ml의 혈액을 흡혈한다고 한다. 둘째는 기계적 출혈이며 십이지장충이 장점막의 한 곳에서 흡혈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상체에서 계속 출혈이 된다. 셋째는 십이지장충의 독소가 흡수되어 적혈구의 용혈률을 일으키므로 일어나는 빈혈이다. 일반적으로 40마리 이상이 기생하면 빈혈상태가 일어난다고 한다.

철분의 필요량은 손실량, 성별, 생리상태 및 성장속도등에 따라 다르다. 정상인은 1일 약 1.0mg의 철분이 상실되며 출생시 인체내 철분은 약 300mg정도 저장되며 20세 이상의 성인남자는 약 5,000mg 15세 경의 사춘기여성은 약 3,500mg을 체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철의 1일 필요량에 대하여 미국 R.D.A에 의하면 영유아는 1일에 6.0—15.0mg, 생후 1년경에 체중 1kg당 1.5mg을 권장한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1일 남자 10.0mg, 여자 18.0mg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영양권 장량은 남자 10.0mg, 여자 13.0mg을 권장하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약 3—4배의 철량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성의 권장량은 18mg이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철결핍의 요인으로 장관내에서의 흡수율이 크게 문제되므로 철분의 흡수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식이중의 철분의 흡수율은 그화학적 형태, 위장의 생리적 상태 등에 영향을 받으나 일반적으로 식물성식품 보다 동물성식품의 흡수율이 높다.

앞으로 학교보건사업의 활동을 크게 개혁할 시기가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학교보건사업은 기생충검사 혈액형검사 등에 치중하였으나 좀더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할 때가 왔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별로 갖지 안했던 학생들의 빈혈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기생충검사를 위한 대변검사에 그치지 말고 소변의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여 신장염(침재성 또는 활동성)을 조기 발견할 필요도 있고 영양에 대한 계몽지도와 학교급식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지역판례상 참고문헌의 게재를 생략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33페이지에서 계속>

環境保全法의 諸規定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特히 汚染 排出施設 設置, 排出施設의 檢查를 받지 아니하고 操業하는 者, 移轉命令을 違反한 者, 不合格 車輛을 製造輸入한 者는 3年 以上的 徵役 또는 1500萬원의 罰金을 課하며(第66條) 其他 違反事例에 對해서도 徵役 또는 罰金을 課하도록 되었다.

#### 16. 關係法과의 關聯性

環境保全法은 他法과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 環境保全을 위해서는 이를 關聯法과 抵觸되는部分이 적지 않다. 例를 들어 國土開發綜合計劃法, 河川法, 都市計劃法, 都市建築法, 下水道法,

上水道法, 工業團地造成法, 汚物清掃法, 開港秩序法, 海上法, 水產保護法, 山林法, 國立公園法, 外資導入法, 食品衛生法, 農藥管理法, 道路運送車輛法 等等 여러 部分의 調整이 必要하게 된다.

특히 1977년 12月에 通過된 海洋污染防止法은 環境保全法과 같이 沿近海上에 放出되는 廢油, 汚物廢棄物을 禁止 規制하여 自然을 保護하고 魚族資源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河川 臨海都市와 工場海上施設의 汚染行爲를 規制한 것으로 環境保全에 効果를 가져올 수 있는 新しい 政府의 劇期의 對策을 表現한 것이라고 生覺된다.